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추가〉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7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출자 : 김현정의원 등 17인
2. 제출일 : 2024. 8. 22.
3. 회부일 : 2024.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2. (생략) 3. 정당의 <u>당원</u>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u>후보자로 등록한 자</u> ② (생략)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u>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4. ----- ----- <u>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5조¹⁾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²⁾, ③ 정당의 당원,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현재의 당적 보유 및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기간(3년간) 동안의 당적 보유 및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여부’ 등도 위원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1)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직무수행에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과 같이 이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침해 가능성 및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결격사유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침해 가능성³⁾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정당 당원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3년 동안 공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데, 이는 결격사유의 추가로 달성하려는 위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고려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3)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4)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 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⁵⁾

□ 둘째,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결격사유와 개정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정 간에 형평성, 균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하게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⁶⁾의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항을

-
- 4)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2021헌마460. 재판관 7인은 전부위헌, 재판관 2인은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에 관한 부분만 일부 위헌
- (주요 결정 내용)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
 -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추론 내지 추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탈당 등으로 법관 임용 시점에 당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논리필연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 6) 「정부조직법」 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총 6개임.(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

살펴보면 법률에 따라 다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정당의 당원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삼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결격사유 현황>

위원회명	위원 결격사유		근거 법률
	정당 당원 관련	선거 후보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O (정당의 당원)	X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정거래위원회	O (정당 가입 금지)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금융위원회	O (정당 가입 금지)	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O (정당의 당원)	O(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당의 당원)	X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원자력안전위원회	O (정당의 당원)	X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와 함께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 여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와의 형평성·균형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담임권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결격사유 규정

위원회명	위원 결격사유
국가인권위원회 ⁷⁾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u>정당의 당원</u>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u>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u>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상실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u>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u>

위원회명	위원 결격사유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7)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아님.

